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위원회 소 관																				
1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제안이유 · 2001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세입·세출 예산집행 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하여 결산서를 작성, 그 결과를 자체 분석하고 · 시의회에서 선임한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위원회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련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코자 함 ☐ 주요골자 (단위 :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예 산 액</th><th>세입결산액</th><th>세출결산액</th><th>세계잉여금</th></tr> </thead> <tbody> <tr> <td>계</td><td>1,004,986,314,000</td><td>1,167,935,113,050</td><td>860,984,077,180</td><td>306,951,035,870</td></tr> <tr> <td>일반회계</td><td>620,254,955,000</td><td>760,054,387,080</td><td>600,162,551,210</td><td>159,891,835,870</td></tr> <tr> <td>특별회계</td><td>384,731,359,000</td><td>407,880,725,970</td><td>260,821,525,970</td><td>147,059,200,000</td></tr> </tbody> </table>	구분	예 산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1,004,986,314,000	1,167,935,113,050	860,984,077,180	306,951,035,870	일반회계	620,254,955,000	760,054,387,080	600,162,551,210	159,891,835,870	특별회계	384,731,359,000	407,880,725,970	260,821,525,970	147,059,200,000	회 계 과	경제환경
구분	예 산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1,004,986,314,000	1,167,935,113,050	860,984,077,180	306,951,035,870																				
일반회계	620,254,955,000	760,054,387,080	600,162,551,210	159,891,835,870																				
특별회계	384,731,359,000	407,880,725,970	260,821,525,970	147,059,200,000																				
2	성남시옥외광고 물등관리조례안	☐ 제안이유 · 2001. 7.2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과 2001. 11.2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과거 시·도지사 및 광역시장에게 위임하였던 업무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직접 위임함에 따라 · 옥외광고물법의 제정 목적인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公衆)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시행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시민봉사과	자치행정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위원회 소 관
		□ 주요골자 ·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광고주에게 사전통보, 연장허가·신고 미이행에 따른 문제점 사전해소(안 제2조) · 광고물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설정(안 제3조) · 긴급히 정비해야 할 불법광고물의 범위 설정(안 제4조) · 성남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세부규정과 심의대상 범위설정(안 제6조·제7조) · 허가·신고로 설치된 옥외광고물 대해 사후 고정물에 대한 부착 내구력·전기안전·자재의 적정성등 안전과 관련한 검사업무의 위탁대상자의 시설기준과 위탁절차 규정(안 제9조·제10조·제11조) · 현수막지정게시대·지정벽보판 등 게시시설의 위탁대상과 위탁관리의 세부범위 설정(안 제12조) ·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과 과목, 교육전반에 대한 위탁등(안 제14조·제15조) ·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금액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16조) · 불법광고물중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와 교육불참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금액의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17조) · 불법광고물 철거명령 불이행자인 건물소유자·광고주·광고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신설에 따라 부과금액의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18조)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위원회 소 관																	
3	성남시생활폐기물 의배출방법및수 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95년부터 시행해온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디자인)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종량제 봉투의 두께를 강화하여 잘 찢어지지 않도록 개선(0.020~0.025mm → 0.030mm) (안 제6조, 별표3) · 음식물 전용봉투의 종류를 소형으로 세분화 (기존 3ℓ → 1, 2, 3ℓ) (안 제6조, 별표3) · 봉투제작 사양(봉투 디자인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안 제7조제5항) · 1회용 비닐봉투를 별도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는 근거 마련 (안 제2조, 별표 2)	청 소 과	경제환경																	
4	성남도시계획시 설(공원)변경결 정에관한의견청 취안	□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거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35명 이하로 감축함에 따라 교실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시가지내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공원부지 일부를 해제하여 학교를 건립함으로써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시설 의 세분</th>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3">면적(m²)</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 정</th> <th>변경</th> <th>변경후</th> </tr> <tr> <td>변 경</td> <td>대원 근린 공원</td> <td>하대원동 208-1번지 일 원</td> <td>1,133,510</td> <td>감) 13,814</td> <td>1,119,696</td> <td>학교 신설</td> </tr> </table>	구 분	시설 의 세분	위 치	면적(m²)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 경	대원 근린 공원	하대원동 208-1번지 일 원	1,133,510	감) 13,814	1,119,696	학교 신설	도 시 과	도시건설
구 분	시설 의 세분	위 치				면적(m²)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 경	대원 근린 공원	하대원동 208-1번지 일 원	1,133,510	감) 13,814	1,119,696	학교 신설															